

#### [서식 예]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(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)

## 소 장

- 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 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  전화·휴대폰번호:
 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- 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 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  전화·휴대폰번호:
 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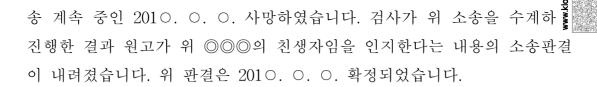
####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

#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# 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소외 ◎◎◎과 소외 ◇◇◇의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가족관계등록 부상 위 ◇◇◇을 어머니로, 아버지는 없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.
- 2. 위 ◎◎◎은 위 ◇◇◇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원고에 대한 인지청구소



- 3. 그런데 위 ◎◎◎의 어머니인 피고는 위 ◎◎◎이 사망한 당일인 201○.
   ○. ○. 위 ◎◎◎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.
- 4. 하지만 원고는 민법 860조에서 정한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위 ◎◎◎의 유일한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고, 후순위 상속인인 피고는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됩니다(대법원 1993. 3. 12. 선고 92다48512 판결 참조).
- 5. 따라서 참칭상속인인 피고는 진정한 상속인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가 있습니다.
- 6.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.

#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의 1, 2 각 기본증명서

1. 갑 제2호증의 1. 2 각 가족관계증명서

1. 갑 제3호증 인지청구소송 판결문

1. 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#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

20 O O . O . O . 어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

# 부동산의 표시

○○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000 대 ○○○㎡. 끝.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
비 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3)참조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
불복절차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
및 기 간	·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
기 타	·자기 또는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됨(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1 다20103 판결).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.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등기·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 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4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소멸시효

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(대법원 1991. 3. 22. 선고 90다9797 판결), 진정

www.klac.or.kr// 100 mww.klac.or.kr// 100 mww.kr// 100 mww.klac.or.kr// 100 mww.klac.or.kr//

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 를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(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2000다36484 판결),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,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음(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0다2968 판결, 1993. 8. 24. 선고 92다43975 판결).

다만 위 사안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 대한 등기이전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을 가질 것 인바(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다12), 상대방의 상속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또는 인지청구 소송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(민법 제999조 제2항)

#### ※ (3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